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. 11. 20 선고 2019가단140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19. 10. 23.

판결 선고 2019. 11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D에게 거제시 E 임야 4285m² 및 F 임야 2538m²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7. 11. 8. 접수 제460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정순열

별지